

[별표 5]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(제25조 관련)

1. 적합성평가 표시기준

가. 기본도안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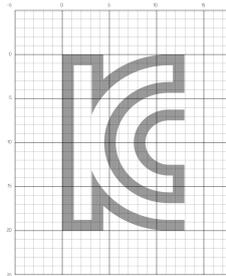


나. 식별부호 표시



다. 도안요령 및 색채

1) 도안 요령 : 적합성평가 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.



2) 색채

가)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을 사용한다.



나)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(KS A 0062에 따른 10YR 6/4 색채)과 은색(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)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남색,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.



※ 비고: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.

| 인증분야 | 식별부호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적합인증 | C (Certification) |
| 적합등록 | R (Registration) |
| 잠정인증 | I (Interim) |

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“시험분야 식별부호”를 기재한다.

| 시험분야 | 식별부호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무선분야 | R (Radio) |
| 유선분야 | T (Telecommunication) |
| 전자파분야 | E (Electromagnetic Wave) |
| 무선, 유선, 전자파 복합분야 | M (Multi Function) |

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“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”를 기재한다.

| 인증신청자 구분 | 식별부호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제조자 | M (Manufacturer) |
| 수입자 | I (Importer) |
| 판매자 | S (Seller) |
| 비고 :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,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. | |

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소장이 부여한 “신청자 식별부호”를 기재한다.

⑥란에는 신청자의 “제품 식별부호(영문, 숫자, 하이픈(-) 혼용 가능,)”를 기재하여야 하며,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.

차.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·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·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.